



2025년 신입직원(일반직, 안전보안직, 계약직) 채용 공고

공고기간 2025.09.23 ~ 2025.10.10

【사회형평분야】

- 전 직군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채용분야별 아래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사회형평(보훈)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- 사회형평(장애):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인면서, 아래의 어학성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- 가. (영어) TOEIC 650점 이상 이거나 TOEFL-IBT 74점 이상 또는 TEPS 245점 이상
- 나. (일본어) JPT 650점 이상
- 다. (중국어) 新HSK 4급 255점 이상
- * ‘청력을 잃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(舊2~3등급)’인 응시자의 어학성적은 붙임5 파일에 규정된 각 어학성적별 ‘어학성적 인정점수’와 ‘제출 원점수’ 중 유리한 점

<안전보안직>

【공통사항】

- 공인어학 성적 :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- (영어) TOEIC 600점 이상 또는 TOEFL-IBT 68점 이상 또는 TEPS 227점 이상
- (일본어) JPT 600점 이상
- (중국어) 新HSK 4급 210점 이상
- 보안검색감독자: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인 자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(국토부예규 제217호) 제41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3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
- 폭발물처리요원: 군대(육·해·공군)에서 폭발물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, 단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(국토부 예규 제424호) 제5조
- *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* 「항공보안법」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계약직>

【응시자격】

- 공사 인사규정 제20조 및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 6조에 따른 임용(채용)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사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
- ※ 자격증/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으로 모두 유효하여야 함

결격사유

<공사 인사규정 제20조(결격사유)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9.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
- 가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·공상군경·4.19혁명부상자·공상공무원·5
- 나. 「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
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13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
-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